

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the Duty of the Business Owner in the Contents(Casino) Corporation related with the Commercial Law – In the case of claim for damages of the gambler against the Kangwon Land(Supreme Ct. 2014.8.21, 2010다92438 case)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Woo-Hyun Chun(jun1234@hanyang.ac.kr)

요약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배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장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강원랜드 카지노 | 콘텐츠산업 | 도박자의 손실과 사업자의 과실(過失) | 경제적 효용론 | 거래량 감소의 역효과 |

Abstract

This is Kangwon Land casino case due to the damages of betting money, which is likely to affect the contents industry in the future. The reason why the gambler and his family's suit is that why the manager did not control their own access or did not supervise the wagering rules. The provisions of the "Restriction on the amount of money to be paid to the casino" in the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bandoned Mine Area are not intended to increase the duty of the casino managers. It is just one of many public regulations imposed. No matter what legislation is made for public interest, it can not be considered equally in the private duty. If so, too much effort will be required to enact or amend the public law and this makes the legislative activity impossible. The Act on the Restriction on Access to the Casino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efficiency theory, if we overestimate statutory duti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excessively, the price goes up on the market,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 decreases drastically. This reduces the economic utility of resources in the society as a whole (total output,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mount, etc.).

■ keyword : | Kangwon Land Casino | Contents Industry | Gambler's Loss and Manager's Negligence | Economic Efficiency Theory | Adverse Effect of Reduced Volume |

접수일자 : 2017년 10월 17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24일

교신저자 : 전우현, e-mail : jun1234@hanyang.ac.kr

I. 서론: 관광사업자의 사업상 주의의무와 면책(상법상 상인(공중접객업자)의 주의의무 결정의 문제)

관광사업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장콘텐츠 사업은 국내의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유치로 인한 국제경상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상법은 이에 관련된 규정으로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이 맡겨둔 입치물의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관광산업 특히 유기장콘텐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기타의 민사 사건(고객의 사망, 상해, 질병사고, 입치물 이외의 민사분쟁을 야기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법상 법리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의 논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본 사안도 그러한 예 중 하나다.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이용객과 그 가족이 왜 이용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배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향후 이러한 사건은 유기장콘텐츠업(카지노 사업 포함)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례를 깊이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유기장콘텐츠업(카지노 사업 포함)의 사업주 책임을 긍정하려면 그의 고의(故意)나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는데 공법상 규정이 특히 과실(過失) 유무에 영향을 주는지가 결정적이다. 이하에서 사실관계, 재판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평석을 전개한다.

II. 사실관계

정선카지노(강원랜드)의 이용자 A(원고: 原告)는 2003년 4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합계 333회에 걸쳐 정선카지노(강원랜드: 피고: 被告 B)에 출입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 주로 바카라 도박게임을 하다가 합계 23,179,100,945원을 잃었다. 피고인 정선카지노(강원랜드)사업자는 카지노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 1998년 6월 29일 설립된 회사인데 2000년 10월 28일부터 '강원

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이름(상호)을 사용하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개장된 업체이다. 이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용 영업장(4층)과 회원 고객(VIP)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5층)을 분리·운영하고 있다. 일반용 영업장의 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배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이지만,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배팅한도액도 거액으로 바카라 게임의 경우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른다.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 B의 회원용 영업장 내에는 VIP 고객 중에서도 이른바 'V-VIP' 고객은 다른 이용자와 분리되어 자신이 동반한 자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약실 2개(다이아몬드룸과 에메랄드룸)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예약실에는 예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예약자와 그 동반 고객 이외의 고객은 출입할 수 없다) 그 내부에는 메인바카라 테이블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딜러(Dealer) 4인, 플로어퍼슨(Floor Person, 테이블 관리요원) 1명, 핏보스(Pit Boss, 플로어퍼슨의 상급자로서 해당 핏 안의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V-VIP' 고객인 게임자는 2억 원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다. 카지노 사업자 B는 원고 A를 포함하여 예약실을 비롯한 모든 게임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게임장면을 녹화·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지노이용자 A의 아들인 C는 카지노사업자인 B에게 A의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출입제한자 명단 이전에 A의 전화를 받고 카지노 직원은 출입제한요청서를 반송하였다. A는 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배팅한도액을 초과한 배팅(이른바 '병정(兵丁): 대리인- 필자 주)을 활용한 초과배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 B는 이를 특별히 제지한 적이 없었다. 여기서 판돈 약 141억 원을 잃은 A는 사업자 B를 상대로 그 돈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III. 제1심(서울중앙지법 2008.11.5, 2006가합 102456판결)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10.13., 2008나113587판결)의 판단

제1심과 제2심은 큰 차이가 없다. 먼저 제1심의 판단을 보면 크게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 대한 출입제한 의무, 배팅한도액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중략) 카지노 도박에 빠져 전문학적인 재산을 허비한 것을 보다 못하여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에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반성하고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의 직원들에게 출입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고, 출입제한이 해제되자 곧바로 카지노에 출입하여 거액의 도박을 계속해 온 점 (중략) 원고의 행위는 그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중략)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 (중략)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잘못된 행위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지도 원리에서 볼 때(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20%로 제한하기로 한다(過失相計) (중략)는 것이다.

제2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중략) 피고(B)가 병적 도박중독자(A)의 출입을 방치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병적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카지노 게임을 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였다면, 피고에게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카지노이용자가 심각한 병적 도박 중독자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그의 출입을 허용함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카지노 사업자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도박자가 배팅하

여 돈을 잃게 되었다면, 카지노 사업자의 이러한 보호 조치 위반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예약실 내에서 우회적으로 배팅한도액을 초과하기 위한 대리배팅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허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배팅한도액 제한을 해제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중략) 피고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중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2,049,197원(= 원고의 손해액 14,146,994,651원 × 피고의 책임비율 15%,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6.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관심 판결선고일인 201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V. 대법원의 판단(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제1심과 제2심과 달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이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중략).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중략).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지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중략).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

다.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등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배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략). 카지노이용자 A의 아들인 C가 카지노사업자인 B 주식회사에 A의 카지노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B 회사는 A의 카지노출입을 허용하여 A가 도박하면서 이른바 '병정(兵丁)'을 내세워 배팅한도액을 초과한 배팅을 한 사안에서, A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 회사에 A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B 회사 직원이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인정한 B(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정하였다.

V. 평석

이 사례에서 하급심은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후견적 보호필요성을 강조하고, 대법원은 카지노 이용객의 자기책임원리에 중점을 두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평석에서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공법규정이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가증시키는가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상법상 관광업(공중접객업)에 대한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교차(交叉)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업인데 이는 사법상(私法上)(상법상 商法上) 공중접객업에 해당한다. 상법

은 제10장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하고(제151조) 그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수용하면서 그들이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댓가로 영업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업 혁신을 의미한다[1]. 이러한 상행위와 상행위법의 혁신추세는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공중접객업은 기본적인 상행위이고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상법 제4조, 제46조 제9호)[2]. 그 이외의 상행위 목적으로 설비를 한 경우라면 설비상인(상법 제5조)이 될 것이다.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을 예시하였을 뿐이지만 목욕탕, 당구장, 탁구장, 골프장, 호텔, 여관, 스키장, 콘도, 나아가 이발관, 미용업도 포함한다[3]. 공중접객업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인이 빈번히 출입한다는 것이다[4]. 영업을 하는 고객이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이득을 얻는데 고객은 지참물의 분실우려가 크다는 데서 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5]. 상법 제10장(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는 상인의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그 책임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로마법상 레셉툼 책임에 기원을 둔다[6]. 과거에는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나 나쁜 평판이 그 주의의무 가중, 엄중한 책임 부과 이유였으나[7] 지금은 그러한 이유가 없으므로 가중책임 내용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고객의 임치를 전제한 책임규정일 뿐 구체적으로 업자와 고객 사이에 어떤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가는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만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8] 그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발관이나 미용실은 도급계약, 당구장 탁구장 골프장 등과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본 사례의 카지노업 등 콘텐츠산업 포함)[9], 호텔 여관 스키장 콘도 등은 임대차 계약이나 혼합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상 공중접객업 규정은 고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일반법리로 해결해야 한다[10].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자간의 일반 법리에 의한다. 다시 말해 물건의 임치 이외에 부담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주의의무의 유형과 정도는 이 계약의 유형과 약관, 상관습[11], 민법의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유무, 범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관계의 손해배상 사건도 같다. 여기서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인 고객이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계약관계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12]. 관광업 등 공중접객업은 다수의 공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영업이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안상, 위생관리상의 목적에서 감독을 엄중히 하는 공법상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데[13]. 이러한 엄정한 규제가 사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주의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본 분쟁사례 또한 이에 관련되어 있다.

2. 공익상 영업규제와 주의의무 가중여부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의 규제는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규제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카지노 영업주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것인지가 본 사례의 핵심쟁점이다. 이 쟁점은 카지노 사업 뿐만 아니라 공중접객업 특히 관광사업 전반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 사례에만 집중한다. 본 사례에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과는 달리 제시된 반대의견과 하급심의 의견은 영업주의 주의의무가 공법규정(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출입금지 규정, 1회 베틀한도 규정 등)에 의해 가중된다는 것이다. 즉, 카지노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카지노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논지이다. 그러나, 이 관련 법규는 권리규정이거나 보호이익 규정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반대의견은 카지노 이용자(A)의 자기책임보다는 그에 대한 후견적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카지노 사업자(B)에 대한 무리한 주의의무 요구로 보여지고 이러한 결과는 카지노 사업의 규제 과잉으로 될 우려가

있다. 이하에서 항목을 나누어 살핀다.

2.1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이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지 여부

이 법률 제11조 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 시행령 제14조는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공익상 규제에는 그 외에도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카지노업의 설립주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 규정 중 일부를 위반한 것이 카지노영업주의 과실(過失) 성립사유가 되는가가 쟁점 중 하나다. 과실(過失: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린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자유 없이 어떤 사람이 사업(카지노 사업 등)을 할 수 있는가? 예측가능성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어떤 사업도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사업(카지노 사업 등 게임사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은 증폭된다.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확립된 행위기준을 위반해야 한다[14]. 과실이 있는지는 정상적 정신상태, 정신적으로 결함이 없는 합리적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당사자만을 기준으로 한 기대가능성 판단이 아니다. 과실 여부에 대한 기준을 행위자 자신을 기준(주관적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그와 거래관계를 맺는 타인(어떤 사람이라도 이 거래의 상대방인 ‘타인’이 될 수 있다)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15]. 그 판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위험을 줄이는데 드는 사전 주의(事前 注意)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과실(過失) 여부 판단은 각 경우에 따라 무수한 사리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는 피해

자의 손해 정도와 비중, 주의가 기울일 수 있는 난이도, 이 주의의무 부과에 따른 산업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16]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는가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목적이나 특별한 통행허가 없이 출입(예, 공원이나 우체국 출입)하거나 특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입(예, 사례에서처럼 카지노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하거나간에 그 소유자나 관리인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면책된다. 생각건대,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이 사법상 주의의무 가중으로 확대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만약 그러하다면 공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익형량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는 사실상 입법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에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을 하도록 카지노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 그리고 이 위임을 받아 카지노업 약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배팅 한도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도 그 위반이 바로 카지노장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과도한 배팅을 하여 도박자금을 잃은 고객에게 잃은 돈을 배상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채무이행에서 상대방의 거절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즉,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성립하지 않음). 만약 백 번 양보하여 카지노 사업자 측의 배팅 규제 주의의무를 긍정한다고 하여도 카지노 사업자가 배팅한도를 규제하려고 하여도 카지노 이용자 자신이 ‘소위 병정(兵丁)’을 이용한 대리인을 3인이나 대동하고 배팅금액을 나누어준 후 같은 방향으로 자신을 따라 배팅하게 한 것은 이 배팅제한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거절한 명백한 행위(사실상의 거절 의사표시)이므로 사업자의 과실(過失)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2.2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이 카지노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지 여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을 제

한하는 사유를 여럿 열거하고 있다. 별표 1, 2, 3은 각각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 구비, 1일 8시간 이상 영업(중략)'을 정하고 '(중략)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시설·통계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중략)'하게 하며, '(중략) 게임기구와 칩스·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배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도록 (중략)'한다. 이러한 규정은 카지노 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통제장치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 특히 별표 9호가 중요한데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 세목으로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① 첫째, 이 규정내용은 카지노에서 도박의 결과 가산당진(파산 등), 가정해체, 이용자의 중독등은 사회적 병리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법상 조치라고 해석된다. ② 이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에서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출입제한이지 카지노(도박장) 이용자에게 자신의 도박중독 예방, 가산당진(파산)이나 가정해체 예방권(豫防權)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법률상 보호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 ③ 카지노 이용자의 가족 등이 출입금지를 요청하려면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는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확정적 의사표시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 사례에서는 가족의 철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출입금지 요청서의 반송 요구)가 있었다. 한 때 가족의 출입금지 요청이 있었으나 그 의사가 번복된 경우까지 종업원의 주의의무를 더하게 하여 이용자 출입을 금지

하거나 퇴거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출입을 하지 않아서 가산(家産)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출입이 허용되어 가산을 탕진한 경우(본 사례처럼)라도 출입한 후 수 백 억에 달하는 금액을 배팅한 이용자는 정신 이상자나 미성년자와 같은 판단 불능·미숙아가 아니다. 이런 경우까지 사업자(또는 종업원)에게 출입제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출입한 후 그 이용자의 배팅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감시·제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별표 10에서는 별도로 카지노이용객의 슬롯머신·비디오 게임 등 게임금액의 한도, 카지노 영업자측의 이용객에 대한 자금대여 금지 등을 정하였는데, 이것도 이용객에게 이를 어기지 않을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는 도박의 과열, 가산탕진으로 되기 쉬운 급전마련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정장치 즉 공익적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책임의 예외가 적용되는 불완전 행위능력자의 경우 상대방의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등에서 미성년자 등 불완전 행위능력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둔 것일 뿐이다. 만약 판단능력이 사회 일반 평균인보다 부족한 상습도박자, 음주명정자 등이라고 하여 거래 상대방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킨다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형평(衡平)'이라는 개념과도 상치된다. 실령 1회 배팅한도를 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방탕성을 억제하고 재산의 일부 보전에 기여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카지노 사업자의 재산권을 가벼이 여기고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권을 귀중히 형량(衡量)하라는 규범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는 재산권이나 이익을 '측정(測定)'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과잉 도박(過剩 賭癡)의 위험성을 건전한 사행 놀이로 유도하여 건전하게 사행산업이 안착(安着)하게 하려는 '질서(秩序)' 배려의 취지라고 봐야 한다. 그로 인한 카지노 이용자의 배팅한도 조절은 이 '질서(秩序)' 유지의 반사적 효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카지노 이용자의 과잉 배팅으로 인한 재산손실을 카지노 사업자가 제지하지 않은 과실(過失)에 그 탓을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3. 동 판결에 대한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적용

어떤 사람이 고의행위나 과실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했다는 점이고 둘째, 사회 전체적인 파레토 최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효용 또는 부(wealth)를 감소시켰기에 따르는 응징이다. 파레토 최적이란 한 사회의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이 최적인 상태이다. 그리하여 자원배분의 변경은 누구 한 사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관계(私法關係)에서 거래는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파레토 기준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17]. 여기서는 두 번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법경제학이라고 한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엄격한 분석방법을 개발해왔다[18].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회적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19].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법 현상을 경제적 효용론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법적 요건과 효과가 행위 참가자에게 어떤 효용성(효율성)을 갖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 학문은 코즈라는 학자 등에 의해 제창되었는데[20]. 우리나라에서는 법경제학회 가 결성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현실의 계약 등 민사관계에서는 어떤 입법, 해석을 하느냐가 사회적 자원 배분(예컨대, 이 사례에서라면 카지노 사업의 공급과 수요, 거래량, 가격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법경제학의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 합목적성(合目的性), 구체적 타당성인데 이는 비교형량을 전제하므로 법경제학상 효용비교론이 필요하기도 하다. 비교형량은 주의능력의 정도, 주의의무의 정도, 실제 과실(過失)의 존부와 정도,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권 보호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民事法) 영역에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에서도 법경제학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법에서 효율성만을 고려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정의로운 판단을 하려면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법경제학적 방법이 발달하고 현실의 규범을 지금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입법에서나 판결에서 그 방법론을 수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법경제학 방법론이 기존의 해석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21]. 이 법경제학을 일정 부분 용인한다면 당사자간(예, A-B간)의 책임문제 뿐만 아니라 규제(법, 제도)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사례에서 등장한 카지노에 대한 행정규제(이용자의 출입제한, 베탱한도의 설정 등)가 규제가 없을 때의 비용보다 크가를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규제가 필요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권리제한 법규의 필요성, 비례성 등의 기준(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법리)으로만 생각되던 종래의 접근과 달리 법경제학 관점은 피규제자의 기본권(헌법 제15조상 영업의 자유 등) 제한의 위헌성 판단에 더하여 규제가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의 비용-효용 비교를 추가한다. 그런데 법규 등 규제를 할 때 규제자(입법부, 행정부)는 이 비교의 대상자료, 비교 능력이 피규제자(기업이나 가계 등)보다 우월하다는 전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비교 자체도 수량의 비교가 아닌 한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법경제학이 지적할 수 있는 장점이다. 특히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규제라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론이 여기에서 나온다(규제의 효용과 비(非)규제의 효용 비교론). 규제가 가해지면(예컨대, 카지노 사업에 대한 주의의무가 가중되면) 시장의 공급은 감소하고 그 사업의 거래량은 감소된다는 점에서 이 규제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된다. 사례에서 카지노 사업자가 이용자의 출입금지, 1회 베탱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더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가(즉, 카지노 사업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되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지만 다음의 도해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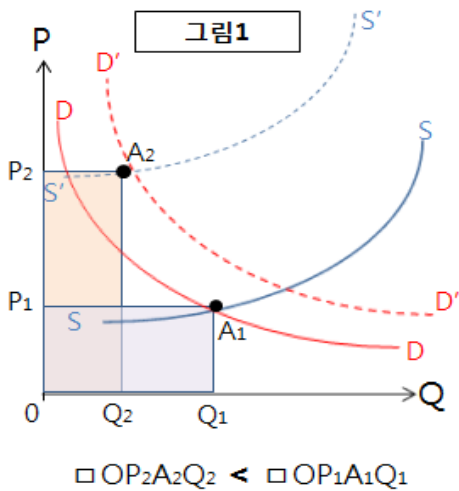


그림 1. 카지노업 공급감감, 수요미세증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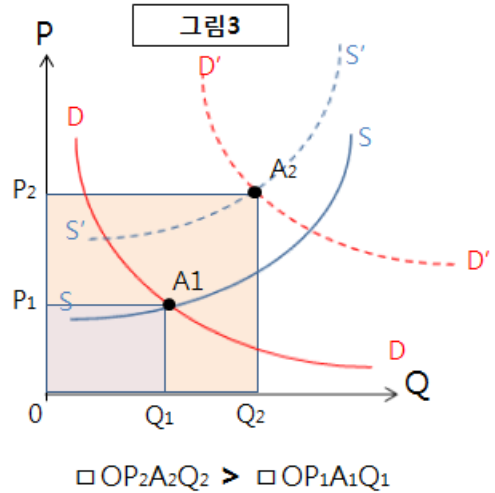


그림 3. 카지노업 공급격감, 수요폭증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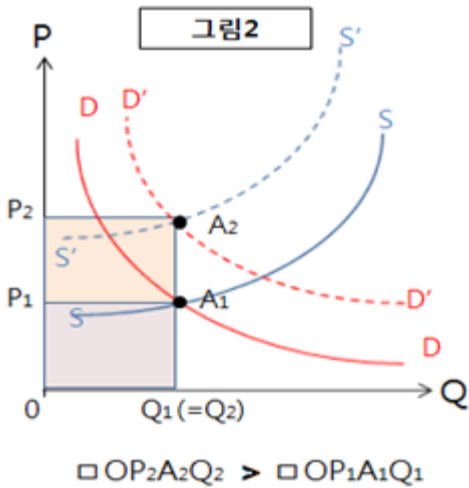


그림 2. 카지노업 공급감소, 수요증가(균형가격유지)의 경우

위에서 공급곡선이 좌(左)로 이동하는 것(공급감소: $SS \rightarrow S' S'$)은 카지노 사업자의 주의의무 가중(즉, 배상책임 증가)으로 인해 i) 종업원 증원, CCTV 증설,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증가 ii) 부당한 배상책임 부담에 대한 주관적 거부감으로 인한 투자위축을 나타낸다. 수요곡선이 우(右)로 이동(수요증가: $DD \rightarrow D' D'$)하는 것은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는 수요증가(즉, 카지노 이용객 증가)가 공급감소(카지노 사업자의 위축, 사업감소)를 상쇄할 정도가 되어(이는 적어도 공급량 유지 관점) 거래량은 종래와 비슷(또는 균등)하지만 가격은 높아지는 경우이다. [그림 3]은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 사업자의 주의의무 가중(즉, 배상의무 가중)으로 인하여 배상가능성을 과신하여 카지노 출입을 대폭 늘리는(즉, 수요폭증)경우이다. 여기서 가격(카지노 이용료)은 높아지지만 거래량(카지노 사업의 번창)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생각건대, 기업은 무엇보다 비용을 줄여 편익을 추구하려는 활동의 결과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자발적 조직이다[22].

카지노 사업자인 기업조직에게 이용객의 출입통제 배려, 배팅액수 제한 준수 노력의무를 가중한다고 하여 그 이용을 대폭 늘리는(수요 폭증, 거래량 폭증) 경우가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발생할지는 의문이다. 그리하여 2)와 3)은 현실 거래에서는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희귀한 사례일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림 1]의 경우가 현실의 거래실정에 부합할 것인데 이는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고 가격은 폭등함을 보여준다($Q1 \rightarrow Q2, P1 \rightarrow P2$). 또, 가격으로 환산한 거래액(즉, $P \times Q$)도 현저히 감소한다(그림에서 보여준 바 $\square OP2A2Q2 < \square OP1A1Q1$). 즉, 카지노 사업자에게 공법상 규제비용을 근거로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는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회(국가) 전체의 효용(총생산량, 외화획득량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공급감소가 수요증가보다 현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즉,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시설투자,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량)은 적어져 그 분야의 사업(예컨대, 국내이든 해외 카지노 이용객 유치이든)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라도 카지노 사업자(B)의 주의의무를 가중시켜 카지노 이용객(A)에게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지우려는 하급심(1심과 2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접근방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VI. 결론

본 사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관계의 손해배상 사건으로 향후에도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틀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자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카지노 이용객의 후견적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강원랜드의 설립근거 법률과 시행령에서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過失)을 도출하고 최종심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 사례는 상법상 공중집객업자의 고객 임치물에 대한 책임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이용 등 콘텐츠 사업에서의 영업주와 고객의 계약체결이나 불법행위 성립 문제로 귀결된다. 공중집객업의 특성, 공법상 규제가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 행정 법규에서 공법적 권리(또는 보호법익) 또는 반사적 이익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기에, 행정법규(공법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손해배상책임 요건으로서의 과실(過失)이 성립하는가는 쉬운 법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법상 콘텐츠사업(카지노업 등) 이용계약 관계에서 과실(過失)유무는 권리주체의 自由意志와 선택 유무,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는 수 천 년에 걸친 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으면 契約, 自治, 영업과 그 이용이라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자유사회의 기반은 붕괴된다. 관광업과 현재 발전하는 콘텐츠사업은 공중이 빈번히 이용하는 영업이므로 그에 공안상, 위생관리상 감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강원도 정선시, 태백시 등 폐광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이런 법규는 공익상 질서유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직접적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이것이 이 분쟁사안에서 바로 권리주체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문이다. 카지노 이용객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의지와 선택에 따른 책임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 공법규정이 사법상의 주의의무를 쉽사리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되어버린다면 공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익형량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입법활동을 심히 저해할 것이다. 카지노업에 관한 규제법은 도박의 결과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안정장치일 뿐 카지노 사업장 이용계약 당사자의 자율과 자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 이용객 입장에서는 공법상 반사적 이익을 얻는 근거로 될 뿐이다. 또, 공중시설업의 이용계약상 사업자의 過失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고 가격은 폭증한다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파레토 최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국가

전체의 총생산,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성장에도 해롭다. 대법원의 판단에 찬성한다.

참 고 문 헌

[1] 김영호, *상법총칙-상행위법*, 팔마도서, 2004.
 [2] 김흥기, *상법강의*, 박영사, 2015.
 [3]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5.
 [4] 神岐克郎, *商法總則-商行爲法通論*, 同文館, 1999.
 [5]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16.
 [6] 최준선, *상법총칙*, 삼영사, 2005.
 [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8]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9]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0.
 [10] 김선광,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상법요해*, 피앤씨미디어, 2016.
 [11] 서경갑, *改訂 商法(總則-商行爲)*, 日新社, 1986.
 [12] 김병연, 박세화, 권재열, *상법총칙-상행위: 사례와 이론*, 박영사, 2012.
 [13] 손진화, *상법강의*, 진조사, 2013.
 [14] Richard A. Mann and Barry S. Roberts, *Business Law*, 13 ed., West, 2006.
 [15] Kenneth W. Clarkson, Roger LeRoy Miller, Garlord A. Jentz, and Frank B. Cross, *Business Law*, 8th ed., 2001.
 [16] David P. Twomey, Marianne Moody Jennings, and Ivan Fox, *Business Law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West, 2001.
 [17] 윤진수,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하는 가능성*, *법경제학(이론과 응용)*, 도서출판 해남, p.5, 2011.
 [18] 신도철, *법경제학: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적용에서의 역할*, *법경제학(이론과 응용)*, 도서출판 해남, p.47, 2011.
 [19] 은승표, “법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복합적 제도 (기업, 국가, 시스템, 시스템세계화) 및 제도선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토지공법연구*, 제10집,

p.411, 2000.

[20]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 pp.1-44, 1960.
 [21] 주진열, “한국 법경제학의 도전과 과제,” *법경제학연구*, 제11권, 제1호, p.3, p.13, 2014.
 [22] 신석훈, “기업의 본질과 경쟁,”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p.116, 2006.

저 자 소 개

전 우 현(Woo-Hyun Chun)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상법, 금융법, 콘텐츠법 등